



[해설]
친환경 수소차 개발에
국고 쏟는 中·日
韓은 '쥐꼬리 예산'
03

metro[®] 경제

21일 Market Index			
↓ 코스피	2337.83	↓ 코스닥	826.22
	(-26.08)		(-13.95)
↓ 금리 (연계 3%)	2.15	↑ 환율 (원/달러)	1112.80
	(-0.01)		(+7.70)

구독료: 월 15,000원 / 1부 8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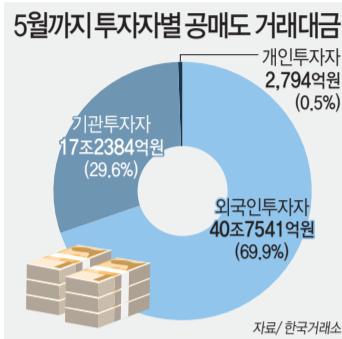
2018년 6월 22일 금요일

기관·외인 전유물 된 공매도, 눈 뜨고 당하는 개미



“러시아 잘 다녀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1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러시아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증권·골드만삭스 發 파문 제약·바이오주로 확산 개인 공매도 피해 속수무책 정부 적극적 정책지원 필요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대심제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개미)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삼성증권, 골드만삭스에서 터진 공매도가 시장의 신뢰를 추락시킨 가운데 최근 제약·바이오주가 공매도에 멎으면서 또다시 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지만 얼마나 효과를 낼 지도 미지수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했다. 주식 대차(대여)와 공매도 경위를 살펴 골드만삭스가 고의로 무차입 공매도를 시도했다는 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종목의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드러났다. 일부 종목에 대한 주식 대차를 확정하지 않은 채 공매도 주문을 낸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숏셀링)'가 발생한 것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앞서 발생한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가 공매도에 대한 개미들의 불만이 시작된 기폭제였다면 골드만삭스의 무차입공매도 사건은 개미들의 불만을 폭발시켰다.

일련의 사건을 통해 증권사는 주식이 없어도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유령주식), 주식이 없어도 주식을 팔 수 있는(무차입 공매도) 시스템의 부실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서 '공매도'로 검색되는 청원은 이달 들어서만 137개가 올라왔다.

아울러 제약·바이오주에 쌓인

공매도는 또 다른 '공매도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요소라는 지적이다. 미래가치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바이오주의 특성상 약성 루머에도 주가가 쉽게 흔들린다. 약성루머가 퍼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면 공매도 물량이 쏟아져나오고, 공매도 물량으로 주가는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대규모 유상증자, 임상환자 사망설 등 각종 약성루머에 시달리고 있는 에이치엘비의 지난 5월 공매도 누적거래량은 187만 687주로 4월(94만 474주)과 비교해 2배 가량 늘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도 80만 6805주의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에이치엘비

주가는 5월에 20% 급락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매도 세력에 개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증권사에서 개인들의 차입주자를 꺼리고 있어서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대차시장의 경우에는 기관투자자만이 참여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유가+코스닥)은 58조 2780억 원이며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의 거래대금은 2794억 원으로 0.5%에 불과했다.

(2면에 계속)

/손영미 기자 sonumij301@metroseoul.co.kr

소득 줄이고, 담보 누락하고 은행들 '금리산정 조작' 적발

금감원, 금리 산정체계 점검 부당 이자 지불 환급 조치 내역서 제공해 투명성 강화

그간 시중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계산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부당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의 경우 고객의 소득을 실제보다 축소하거나 제공한 담보를 아예 입력하지 않는 '조작'에 가까운 방식으로 높은 이자를 물렸다.

감독감독국은 소비자가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지불한 경우 은행에 환급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해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월 중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21일 이 같은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9개 은행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한국씨티·SC제일·부산은행이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리스크 관리비용 등의 원가 요소를 더한 다음 영업상황에 따른 우대금리 적용 등의 추가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이런 금리 산정 과정에서 일부 변수를 임의적으로 조정하거나 거

짓으로 입력했다. 한 은행은 대출금리를 정할 때 부채비율(총대출/연소득)이 250% 초과할 때는 0.25%포인트, 350% 초과시 0.5%포인트를 가산금리로 부과했다. 그러나 A은행의 일부 영업점은 고객의 연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이 없거나 실제보다 더 적게 입력해 높은 이자를 받아낸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적발됐다.

실제 직장인 A씨는 2015년 11월 5000만원의 가계일반대출을 받았다. A씨는 연소득이 8300만원이었지만 소득이 없다고 입력해 부채비율 가산금리 0.5%포인트가 추가된 6.8%의 대출금리를 적용받았다. 2년 만에 대출을 상환한 A씨가 부당하게 더 낸 이자는 50만원이나 된다.

다른 은행은 영업점 직원이 전산으로 산정된 금리가 아닌 기업 고객에게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13%)'를 적용해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경우도 있었다.

또 고객이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없는 것으로 금리를 산정해 높은 이자를 받아낸 사례도 적발됐다.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액 대비 담보물의 가액이 높을수록 낮은 가산금리가 적용되지만 담보 자체를 없애고 입력해 버렸다.

(2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

경찰, 檢지휘없이 1차 수사... 수직 아닌 대등관계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지휘권 이양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

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된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수직관계였던 검찰과 경찰을 상호협력관계로 바꾸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21일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로 입법을 통한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정부는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검·경을 수직이 아닌 상호협력관계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가 폐지된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정부가 사법경찰과 검찰의 수평적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21일 발표했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명한 합의문을 들고 있다. /손영미 기자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와 징계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권을 갖게 된다.

반대로 경찰이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 운영해야 한다.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 검사에

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한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정부는 자치경찰제와 행정경찰·사법경찰분리방안, 경찰대 개혁방안 등에 대한 합의사항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계획에 따라, 경찰은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해야 한다.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조직 등도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또한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설치계획, 비수사 분야인 지역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 수사 분야의 사무 권한, 인력과 조직의 이관계획을 분권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야 한다.

우선 경찰은 사법경찰직무에 중사하지 않는 경찰이 사법경찰직무에 개입·관여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인사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 역시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등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번 합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정부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법무부는 검·경 등 수사기관의 의견을 들어 내사 절차 관련 법규 제·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검경은 이번 합의에 대한 입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합의의 취지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범중 기자 joker@